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6. 5.

여 수 시 장 (인)

## 1. 도로명주소(부여·폐지) 내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부여사유	비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민원출장소 주소정보팀(☎061-659-3355 ~ 335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2.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3.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4.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조서

업무구분	종전주소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폐지)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창무리 54-9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화양로 1714-22	20250605	건축물 신축	20091013	도로가 지나는 지역 화양면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715-3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개도별촌길 39-1	20250605	건축물 신축	20080911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해산동 402	전라남도 여수시 해지길 49-4 (해산동)	20250605	건축물 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405-52, 1405-8, 1405-9, 1405-44, 1405-73, 1405-79, 1405-80, 1405-136, 1405-150, 1405-185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진모1길 29-42	20250605	건축물 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 464, 산3-1, 462-1, 462-5, 463, 464-1, 465, 468-1, 468-2, 468-3, 469-1, 470, 599, 599-1, 600-1, 600-2, 609	전라남도 여수시 대경도3길 48 (경호동)	20250605	건축물 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경호초등학교

##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열람공고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 중에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6. 5.

###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 여수시 웅천동 1763번지 일원

#### 2. 사업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1)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2-83호선 확·포장)사업

2)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 2-18호선보도 정비, 공원: 웅천공원 보도 정비)사업

나. 명 칭: 웅천 자이 더 스위트 도로 확장 공사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도로: 중로 2-83호선 확·포장

1) 면 적: 1,048㎡

2) 규 모: L=150m, B=15~19m

나. 도로: 대로 2-18호선 보도정비, 공원: 웅천공원 보도정비

1) 면 적: 218㎡(도로: 168㎡, 공원: 50㎡)

2) 규 모: L=25m(도로)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여수시장

나. 주 소: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년월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나. 준공예정년월일: 2026.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7. 공람기간: 2025. 6. 5.~ 6.18.(14일간)

8. 공람장소: 여수시 도시계획과, 도로과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4) 및 도로과(☎061-659-4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현황	
	시	동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합 계 (총 5필지)					81,362.3	1,266.0		
1	여수시	웅천동	1758	도	49,848.5	168	여수시	
2	여수시	웅천동	1763	도	3,463.7	647	여수시	
3	여수시	웅천동	1703	공	8,342.8	401	여수시	
4	여수시	웅천동	1865-4	도	255.4	36	여수시	
5	여수시	웅천동	1865-3	천	19,451.9	14	여수시	

## 「뷰티·스파 웰니스관광 거점화사업」 건축 설계공모 심사결과 공고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제14조에 따라 「뷰티·스파 웰니스관광 거점화사업」에 대한 건축 설계공모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4.

여 수 시 장

### 1. 심사개요

- 일 시 : 2025. 5. 28.(수) 14:00
- 장 소 : 여수시 국동임시별관 회의실(2층)
- 심사대상 : 4개 작품
- 심사방법 : 투표제(심사위원회 결정)
  - 1차 투표 : 3, 4순위 결정(다득표 작품을 하순위로 결정)
  - 2차 투표 : 1, 2순위 결정(다득표 작품을 당선작으로 결정)
- 심사위원 : 7명(전원 참석)
  - 심사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자 격	비 고
심사위원 (7명)	곽영경	(주)간토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김한얼	(주)한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나은영	나숨건축	건축사	
	박성진	목포대학교	교 수	
	박용목	(유)다산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박홍근	(주)포유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백진영	건축사사무소진	건축사	

## 2. 심사결과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공동응모자
당선작(1등)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이길환	(주)지평건축사사무소 [대표 김동우]
우수작(2등)	(주)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김기영	-
가작1(3등)	(주)건축사사무소휴먼플랜	양병범	(주)종합건축사사무소창 [대표 정현아]
가작2(4등)	프라임건축사사무소	이경탁	-

## 3. 붙임

- 가. 심사의결서
- 나. 심사결과
- 다. 평가사유서

## 4. 당선작 이미지





## 자연과 조화로운 웰니스-포레스트

### 아쿠아 포레스트(Aqua Forest)

선생의 생애자연으로 기록된 여수의 백암대교단근에 자리잡은 대지는 자연의 바다와 맞닿은 절이다. 우리는 스텝식 레벨 위에 계단을 통해 일관 풍사들의 수형요소와 입체적으로 연결되는 카누나트 스텝올더와 연결되는 해양-웰니스계형공간 개념에 방문객들이 바다를 바라보며 힐을 즐기는 힐링(수려)마음간이 되기를 바란다.



가작2(4등) : 프라임건축사사무소

## 6. 기타사항

- 그 외 당선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설계공모 공고문 및 지침서에 따름
- 여수시 관광과 관광개발팀(☎ 061-659-3881)

## 봉전항 내 방치선박(폐선) 제거 공고

우리 시 봉전항 내에 방치되어 있는 선박이 어항 이용의 효용을 저해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공고하오니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방치선박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방치선박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공매 또는 폐기 등의 조치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6월 4일

###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6. 4. ~ 2025. 6. 18. (15일간)
2.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봉전리 180번지 (봉전항 일원)
3. 제거대상 물건의 명칭 및 내용 : 소유자 불명의 방치선박 1척
4. 장애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가.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매 또는 폐기 등의 조치가 실시됩니다.
  - 나. 아울러, 어항 내에 장애물을 방치한 행위자(소유자 파악 시)에 대하여는 「어촌·어항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고발조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해당 물건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은 공고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91)

## 방치 선박(폐선) 제거 공고

방치선박 장소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봉전리 180번지 (봉전항 일원)			
방치선박 제원	선 명 ( 명 칭 )	미상	선박(어선)번호	미상
	선 적 항	미상	톤 수	약1톤
	선 질 ( 선 종 )	FRP	주 요 수 치	미상
어항관리청	여수시	관 리 번 호	제2025-7호	
처리 예정일자	2025년 6월 18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처리방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공매 또는 폐기 처분)			
위반내용	어촌·어항법 제45조 위반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방치선박은 어항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5년 6월 18일까지**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9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4일

여 수 시 장

## 국동항 내 방치선박(폐선) 제거 공고

우리 시 국동항 내에 방치되어 있는 선박이 어항 이용의 효용을 저해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공고하오니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방치선박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방치선박이 제거 되지 않을 경우 공매 또는 폐기 등의 조치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6월 4일

###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6. 4. ~ 2025. 6. 18. (15일간)
2.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1082-1번지 (국동항 일원)
3. 제거대상 물건의 명칭 및 내용 : 소유자 불명의 방치선박 2척
4. 장애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가.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매 또는 폐기 등의 조치가 실시됩니다.
  - 나. 아울러, 어항 내에 장애물을 방치한 행위자(소유자 파악 시)에 대하여는 「어촌·어항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고발조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해당 물건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은 공고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91)

여수시 공고 제2025-1734호

## 방치 선박(폐선) 제거 공고

방치선박 장소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1082-1번지 (국동항 일원)			
방치선박 제원	선 명 ( 명 칭 )	미상	선박(어선)번호	미상
	선 적 항	미상	톤 수	약5톤
	선 질 ( 선 종 )	FRP	주 요 수 치	미상
어항관리청	여수시	관 리 번 호	제2025-8호	
처리 예정일자	2025년 6월 18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처리방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공매 또는 폐기 처분)			
위반내용	어촌·어항법 제45조 위반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방치선박은 어항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5년 6월 18일까지**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9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4일

여 수 시 장

## 방치 선박(폐선) 제거 공고

방치선박 장소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1082-1번지 (국동항 일원)			
방치선박 제원	선 명 ( 명 칭 )	미상	선박(어선)번호	미상
	선 적 항	미상	톤 수	약7.93톤
	선 질 ( 선 종 )	FRP	주 요 수 치	미상
어항관리청	여수시	관 리 번 호	제2025-9호	
처리 예정일자	2025년 6월 18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처리방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공매 또는 폐기 처분)			
위반내용	어촌·어항법 제45조 위반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방치선박은 어항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5년 6월 18일까지**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9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4일

여 수 시 장

## 공 고

「여수시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 여 수 시 장

「여수시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기존 「여수시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척수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에 해당
- 단순한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이 아닌, 운영 실태에 맞게 재정비하여 어업 질서 유지 및 어장 이용의 효율성 확보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제1조(목적)
  -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어업종류별·양식방법별·어장규모별·어구명칭별 관리선의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선 척수 기준)

- 관리선의 어업종류별·양식방법별·어장규모별·어구명칭별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관리선 척수 제한)

- 제2조 별표에 따른 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불구하고 해조류양식 패류양식, 어류등양식, 복합양식, 협동양식어업권을 동시에 소유(행사자, 지분권자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도 1인 4척 이내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은 1개 법인당 4척 이내) 관리선의 척수를 제한한다.

3.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기간 : 2025. 6. 5. ~ 6. 25.(20일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25년 6월 25일까지

○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이메일 등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기관: 여수시장(어업생산과)

- 주 소 : 우)59761 전남 여수시 신월로 648, 국동임시별관 3층
- 팩 스 : 061-659-3933
- 이메일 : yerimoon@korea.kr

6.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어업생산과(☎061-659-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 조례명 : 「여수시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반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조례 제 호

## 여수시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어업종류별·양식방법별·어장규모별·어구명칭별 관리선의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선 척수 기준) 관리선의 어업종류별·양식방법별·어장규모별·어구명칭별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관리선 척수 제한) 제2조 별표에 따른 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불구하고 해조류양식 패류양식, 어류등양식, 복합양식, 협동양식어업권을 동시에 소유(행사자, 지분권자 포함)하고 있는 경우 1인 4척 이내로(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은 1개 법인당 4척 이내) 관리선의 척수를 제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어 장 관 리 선 의 척 수 기 준

어업의 종류	어업방법	어장관리선의 척수
해조류양식	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협 또는 어촌계, 개인소유 양식어장에 입어·행사하고 있는 자마다 1인 1척(1인이 입어·행사한 어업권이 여러 건일 경우도 1척에 한함)</li> <li>단, 미역 100대 이상 200대 미만 및 김 100책 이상 200책 미만 2척 이내, 미역 200대 이상 300대 미만 및 김 200책 이상 300책 미만 3척 이내, 미역 300대 이상 김 300책 이상 4척 이내 지정</li> </ul>
패류양식	수 하 식 바 닥 식 가두리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하식, 가두리식은 수협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에 입어·행사하고 있는 자마다 1인 1척(1인이 입어·행사하고 있는 어업권이 여러 건일 경우도 1척에 한하여 지정). 다만, 5ha 이상 입어·행사자는 1인 2척 이내 지정</li> <li>•수하식, 가두리식 양식어업 중 개인소유 양식어장은 1건에 1척 지정(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지분권자마다 지정). 다만, 5ha 이상 소유자(지분권자 포함)는 1인 2척 이내 지정</li> <li>•바닥식 양식어업은 어장면적 10ha 미만 1척, 10ha 이상은 2척 이내 지정</li> <li>•바닥식 양식어업 중 개인어업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어업권을 같이 행사하고 있는 경우도 어장면적 10ha 이상인 경우는 1인 2척 이내</li> </ul>
어류등양식	가두리양식 축제식양식 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ha 미만 1척, 1ha 이상은 2척 이내 지정(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지분권자마다 1척 지정)</li> <li>•수협 또는 어촌계 소유 양식어장에 입어·행사하고 있는 자 중 행사면적이 1ha미만 1척, 1ha이상은 2척 지정(1인이 입어·행사한 어업권이 여러 건을 경우도 2척이내 지정).</li> <li>단, 축제식 양식어업은 1건당 1척 지정</li> </ul>
복합양식	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 혼 합 양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하식, 혼합양식은 수협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에 입어·행사하고 있는 자마다 1인 1척 (1인이 입어·행사한 어업권이 여러 건일 경우라도 1척에 한하여 지정)</li> <li>•수하식, 혼합양식 중 개인소유 양식어장은 1건에 1척 지정(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지분권자마다 지정)</li> <li>•바닥식 양식어업은 어장면적 10ha 미만 1척, 10ha 이상은 2척 이내 지정</li> </ul>
협동양식어업	해조류양식 패 류 양식 복 합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의 척수기준과 동일(단,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의 경우도 수협 또는 어촌계 소유 양식어장 기준을 적용)</li> </ul>
정치망어업	대형정치망 중형정치망 소형정치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형정치망, 중형정치망 1건당 3척 이내</li> <li>•소형정치망 1건당 2척 이내</li> </ul>
마을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촌계별 마을어업 면허된 면적의 합계가 10ha 미만 1척, 10ha 이상 100ha 미만 2척 이내, 100ha 이상 3척 이내 지정 (행사자의 경우 어촌계 동의)</li> </ul>

## 도로 지정(변경) 공고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69번지 외 3필지 상의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변경)합니다.

2025. 6. 4.

여 수 시 장

1. 위 치 :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69-2번지
2. 도로면적 : 250m<sup>2</sup>
3. 도로길이 : 52m
4. 도 로 폭 : 4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sup>2</sup> )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당초	계			1,453	164	
변경	계			1,453	250	
당초	소라면 복산리	69-2	답	1,453	164	
변경	소라면 복산리	69-2	답	1,453	250	

※ 당초 도로 지정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5-153호(2025. 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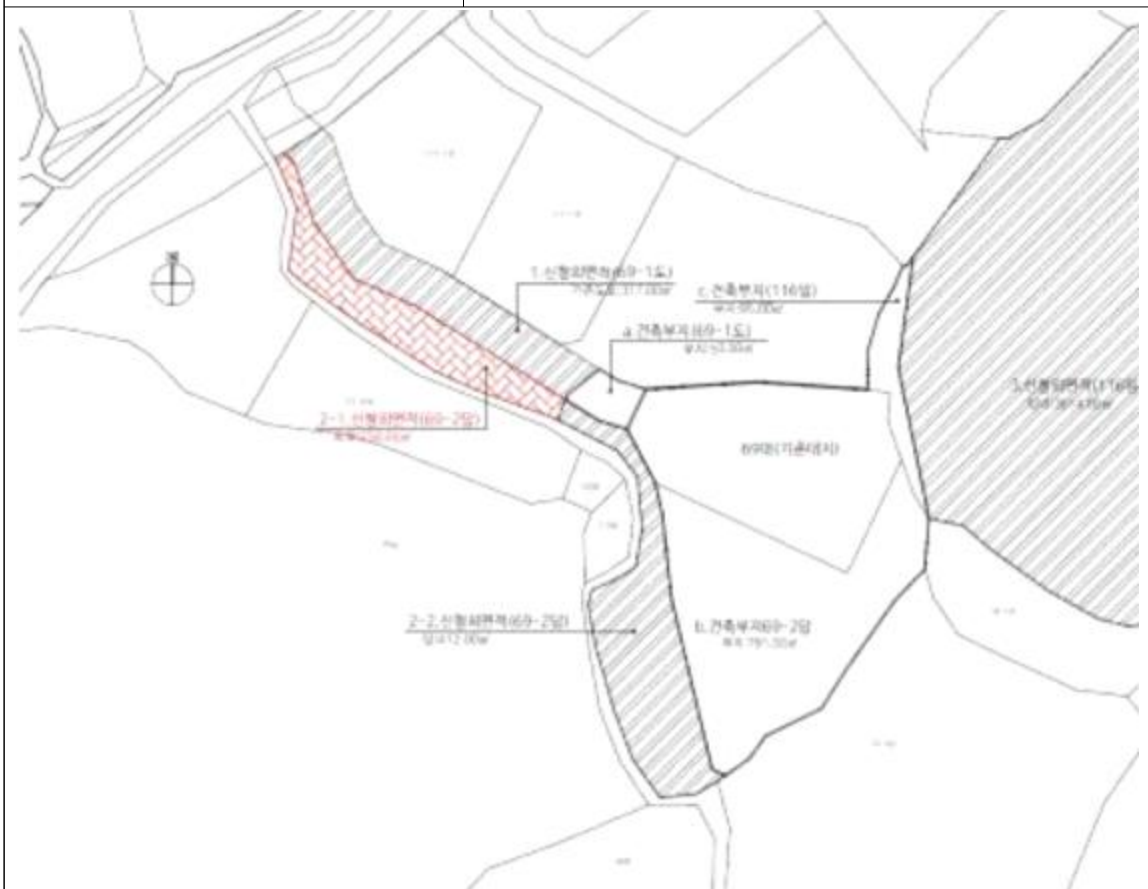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별첨]

위 치 도



현 황 도



# 여수시 본청사 별관증축 건립사업 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연 번	위원	소속	성 명	비고
1	심사위원	홍익대학교	공순구	
2		경북대학교	박용서	
3		대구한의대학교	김성조	
4		정안건축사사무소	이송현	
5		보다건축사사무소	임준현	
6		목포대학교	유창균	
7		세움건축사사무소	박계옥	
학계	예비위원	삼육대학교	정광호	
건축사		건원건축사사무소	김종용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6. 5.

# 여 수 시 장

### 1. 신청개요

신청인	점용·사용 장소	목적	면적	사용기간
김은향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산251-3번지	포락지 조성, 오탁 방지막 설치	3,794㎡ [포락지 2,208 오탁 방지막 1,586]	허가일로부터 5년

### 2. 공람장소, 공람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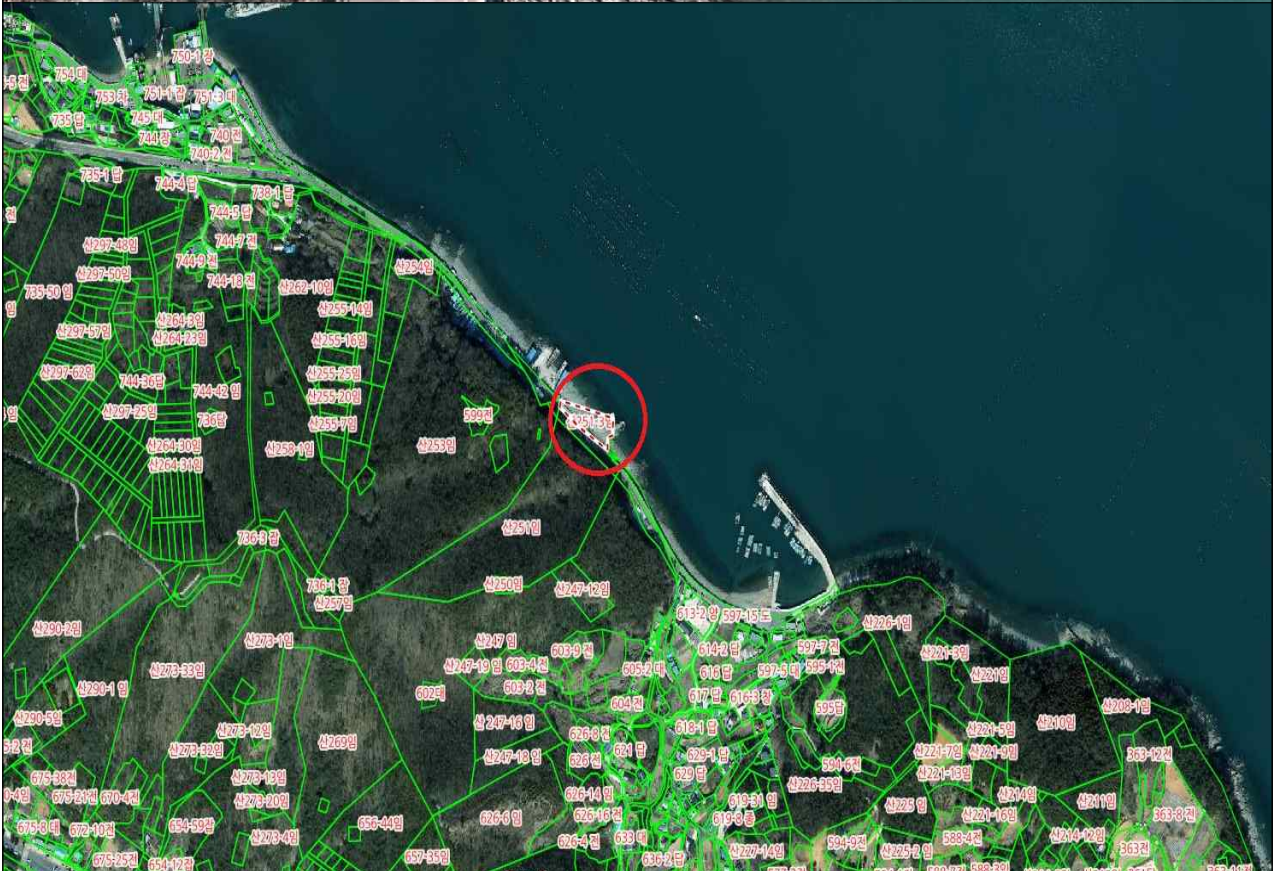
-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정책과
- 공람기간: 2025. 6. 5. ~ 2025. 6. 20.

###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5. 6. 5. ~ 2025. 6. 20.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제출
- 제 출 처: 등기우편(여수시 신월로 648, 4층 해양정책과)  
전자우편(raekeun007@korea.kr)
- 담 당 자: 공유수면관리팀 행정6급 김래근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659-397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사진 및 위치도



## 도로 지정(변경) 공고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674-30번지 외 2필지 상의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변경)합니다.

2025. 6. 5.

여 수 시 장

1. 위 치 :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674-38번지 외 3필지  
(674-39, 675-12, 675-11번지)
2. 도로면적 : 431㎡
3. 도로길이 : 49.8m
4. 도 로 폭 : 8.65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당초	계			969	422	
변경	계			969	431	
당초	소라면 복산리	674-38	도로	189	59	
		674-39	대지	212	161	
		675-12	도로	267	112	
		675-11	도로	301	90	
변경	소라면 복산리	674-38	도로	189	64	
		674-39	대지	212	165	
		675-12	도로	267	112	
		675-11	도로	301	90	

※ 당초 도로 지정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5-1247호(2025. 4. 11.)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상호 및 대표자 : (주)디엠티
2. 영 업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울촌면 울촌산단2로 241-24
3. 법인 등록번호 : 201311-0040848

업종명	등록번호	주력분야	등록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여수-25-파-05	기계설비공사	2025. 6. 5.

2025년 6월 5일

여 수 시 장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6. 5.

# 여 수 시 장

### 1. 신청개요

신청인	점용·사용 장소	목적	면적	사용기간
이영길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산3번지 지선 공유수면	오탁 방지막 설치	500㎡	허가일로부터 6개월

### 2. 공람장소, 공람기간

-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정책과
- 공람기간: 2025. 6. 5. ~ 2025. 6. 18.

###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5. 6. 5. ~ 2025. 6. 18.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제출
- 제 출 처: 등기우편(여수시 신월로 648, 4층 해양정책과)  
전자우편(raekeun007@korea.kr)
- 담 당 자: 공유수면관리팀 행정6급 김래근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659-397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미평동 3통장 모집 공고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미평동 3통장』을 모집하오니 희망자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 바랍니다.

1. 모집대상 : 1명(미평동 3통장)
2. 관할구역 : 미평동 527번지 등 소장마을, 미평초등학교 주변 주택
3. 접수기간 : 2025. 6. 5.(금) ~ 6. 20.(금) [16일간/ 초일산입] ※ 휴일 제외
4. 접수장소 : 미평동행정복지센터(방문 접수) ※ 근무일 09:00~18:00(중식시간 제외)
5. 자격요건
  - 모집공고일 기준 당해 통 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
  - 주민 신망이 두텁고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며 주민들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6. 결격대상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민·형사상 사건에 소추되어 조사 중인 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선정방법 : 선정심사기준에 의한 심사를 통해 임명
8. 제출서류(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가능)
  - 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1부
  - 주요경력 및 증빙서류(자원봉사실적, 수상내역 등) 각 1부
  - (1순위) 주민총회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추천을 받은 경우 추천서 및 회의록
  - (2순위) 주민 20명 이상 추천의 경우 주민 추천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9. 임 기 : 임명일로부터 2년
10.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의 경력 및 자격내용 허위 판명 즉시 통장 임명을 해임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미평동행정복지센터(☎ 659-1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5일

# 미 평 동 장